##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4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구자근・권명호・최형두

김석기 · 김영식 · 박덕흠

송언석 · 이달곤 · 서범수

추경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조항이 빠져있는 등 지원이미비한 형편임.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부터 제54조의6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족"을 "가족 등"으로 한다.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 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보훈보상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3(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같은 법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54조의6(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 자와 그 유족 중 제55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5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 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 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 제1조(목적) ----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가족 등--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 상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 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 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 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 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 는 보훈보상대상자와 함께 지 원할 수 있다. 제54조의3(양육지원) 보훈보상대 <신 설> 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 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

<신 설>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
   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 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 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 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 은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신 설>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 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같은 법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4조의6(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 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5조 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

<u><신</u>설>

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 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 업주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5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